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38
----------	-------

발의연월일 : 2025. 9. 12.

발 의 자 : 위성곤 · 김기표 · 최혁진
박선원 · 임호선 · 노종면
이학영 · 이개호 · 허영
서영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 증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함.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등 공개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등의 재산 등록사항 등을 공개함.

그런데 현재 사모펀드는 예금에 포함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의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예금의 총액에 포함되어 표시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모펀드 내역이 공개되도록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별도의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3호라목 신설 등).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라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8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8. 사모펀드는 평가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을 등록하거나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생략)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3.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신설></u>	<u>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u> <u>이상의 사모펀드(「자본시</u> <u>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u> <u>법률」 제9조제19항제2호</u> <u>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u> <u>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u> <u>자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u> <u>다)</u>
라. ~ 카. (생략)	마. ~ 타. (현행 라목부터 카목까지와 같음)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③ ----- ----- ----- --.

1. ~ 7. (생략) <u><신설></u> 8. ~ 15. (생략) ④ ~ ⑦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u>사모펀드는 평가액</u> 9. ~ 16. (현행 제8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	---